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64
----------	-------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이원욱 · 이용선 · 김병욱
김철민 · 박홍근 · 한정애
강훈식 · 양정숙 · 고용진
정일영 · 전해숙 · 이소영
서영교 · 정태호 · 이용빈
홍성국 · 이정문 · 박상혁
윤후덕 · 윤영찬 · 홍영표
조오섭 · 홍기원 · 한준호
김영주 의원(25인)

제안이유

최근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과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음.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세워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예를 들어 EU는 탄소국경제도과 기업 공급망실사법 등을 마련, 국제적 교역과정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요구하는 등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ESG적 요소는 교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이에 세계 최초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법을 제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가 아닌 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실효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 바.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안 제9조).

사.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야.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안 제16조).

차.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검증하려는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공시선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필요한 기술·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36조).

하. 정부는 자발적 공시선언을 통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8조).

- 거.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음(안 제40조).
- 너. 정부는 기업경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소비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42조).
- 더.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확산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47조).
- 러.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8조).
- 머.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
- 버.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위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50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란 기업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증기관”이란 기업이 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부가 공시한 공시기준에 적합성을 확인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란 기업이 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기

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을 등급화 등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촉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 가능한 발전요소로 인식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기업경영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 등

제4조(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포함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항

4.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기본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제6조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①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 관련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업무

제9조(금융감독시책 등) ① 정부는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금융활동 공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금융기관의 책무 등) ① 금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공공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금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7. 그 밖에 자금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및 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2조(금융기관의 금융지원사업 등) ① 금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업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하는 기업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연금기금의 우선적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3.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금

② 제1항 각 호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해당 기금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공시 등

제14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의무공시기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상인 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는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

증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고 공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발적 공시기업 등) ① 정부는 제14조제1항 외의 기업이 스스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자발적 공시하려고 공식적으로 선언(이하 “자발적 공시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발적 공시선언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선언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자발적 공시선언의 공통기준 및 절차
2. 기업 및 업종별 자발적 공시선언의 목표설정 및 이행 방법
3. 기업 및 업종별 자발적 공시선언의 이행절차 및 이행평가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시기준)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1. 국제회계기준재단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공시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공시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시기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 작성과 검증기관의 검증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기업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시를 하는 기업(이하 “공시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공시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공시기업의 범위와 공시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의 신뢰성 확보) ① 공시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 관련 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시기업은 내부적으로 마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관리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

는 아니 된다.

③ 검증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시기업이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사실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은 그 검증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공시 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정보 공개 등의 의제) 공시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에 관한 공시

제5장 검증기관의 등록 등

제19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 검증기관 등록 등) 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에 관하여 사실여부 및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검증기관은 다른 검증기관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시에 필요한 검증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검증기관이 그 검증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검증사업을 양수한 검증기관이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 또는 법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검증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등
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2조(검증기준) ① 검증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공시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검증기준은 검증기관의 독립성 유지와 환경·사회·지
배구조 경영보고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시검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한다.

제23조(품질관리기준) ① 검증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 검증의 업
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품질관리기준에 검증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검
증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검증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4조(검증보고서의 작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를 기술(記述)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보고서에는 검증범위, 검증기관의 의견 및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에 기업이 작성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에 대한 검증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검증조서)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실시하여 검증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기업이 작성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검증절차 및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검증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조서를 검증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조서를 위조·변조 및 제2항의 기간동안 훼손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증업무를 수행한 검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위원회 위원
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검증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검증업무 정지기간 중에 검증을 한 경우
4.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검증기관에게 등록한 검증기관의 상호를 사용하여 검증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6. 임원 중에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검증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지 아니 하는 경

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 ①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 평가지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표준평가지표의 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평가기관이 신뢰성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기업의 업종이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0조(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공시를 검증한 검증기관

2. 제28조를 위반하여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아니 하고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를 한 평가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9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한 검증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 기업 지원

제31조(자발적 공시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공시선언 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보고서의 작성, 공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발적 공시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발적 공시 등에 대한 자금조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발적 공시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발적 공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단독 또는 연계하여 보증·신용공여·융자대출 등의 자금우대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에 준하는 기관·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조달) ① 조달청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함에 있어 자발적 공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의계약에 반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함에 있어 자발적 공시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 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소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중소·벤처 및 중견기업 지원) 정부는 자발적 공시선언을 통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2. 연구개발의 지원 및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산업생태계 안에서 대기업 및 관련 기업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수행하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지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제7장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제40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투자기관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총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관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 ① 정부는 기업경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소비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

고하기 위하여 판매가격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요소가 적절하게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통계사업)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산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에 투자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국제협력 지원 등)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표준화 개발
2. 국내 모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국외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3. 공시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협조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모범적으로 구축하여 실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정을 받은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에 관한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선정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선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부는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포상을 할 수 있다.

⑥ 선정의 기준, 절차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및 확산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무소,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

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위장 환경·사회·지배구조 조사 및 공표) ①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장한 경우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3. 기업의 홍보나 판매하는 제품 등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위장하는 경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공시하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절차 및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

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등록 취소
2. 제48조제5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52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검증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23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검증기관
2. 제25조를 위반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검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